[별표 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 전 부서

제한 부동산의 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 예정인 토지 및 건물,

공사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

취득제한기간(시기) : 공사의 사업 참여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날

취득제한기간(종기):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

- 1) 본 지침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우선 분양전환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일 이후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은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2) "공사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 중 공사가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제 분양 또는 추첨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3) "공사의 사업 참여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날"이란 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등으로 고시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어 대외에 최초로 공개된 날을 말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이라도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임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제한에 해당하며, 예외적 취득 시 제한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한다.